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4월 26일 (제347회)

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6년 4월 26일

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16. 4. 26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“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” 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
- 위 원 수 : 7인(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 포함)
- 활동내용
 -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백지화를 위한 제반활동 촉구 및 지원
 - 기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 등

2. 제안이유

-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으로 하루 2천200톤 이상의 온천폐수가 괴산 신월천으로 유입되어 유기물과 부유물의 퇴적, 수온상승에 따른 수생곤충, 부착조류, 어류의 전멸 등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며
-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지하수오염
- 그리고 최상류발원지 오염으로 충주시 상수원인 달천강의 직접적인 영향과 서울·경기지역 상수원인 한강의 간접적 수질오염이 우려됨
- 상수원오염에 따른 추가정화처리 작업필요로 필요치 않은 사회적비용 증가 및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공익이 침해되며
-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어,
-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임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관 계 법 령

[지방자치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충청북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8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4. 11. 12>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1998. 3. 6, 2009. 7. 10, 2014. 6. 27>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<개정 1993. 7. 2, 2004. 11. 12>

